

의안번호	제 453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12월 일 (제 285 회)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09년 12월 7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53
------------	-----

제출연월일 : 2009년 12월 7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임원 인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지방공기업법과의 중복조항 삭제, 불명확한 조례명 및 조문 정비 등을 통하여 공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원 인사제도 개선사항 반영 (부칙)
※ 「충청북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 폐지 ⇒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하여 공사에서 운영
- 지방공기업법과의 중복조항 삭제 및 조례명·조문 정비 등
(조례명, 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0조~제14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북개발공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충북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본금) ① 충북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수권자본금은 2,000억 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납입방법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주식의 발행) ①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에 따라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경우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② 공사의 주식은 기명식의 보통주와 우선주로 하여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의 7종으로 발행하며, 1주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③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천만주로 한다.

④ 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이사)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 이사는 도의 관련 실·국장과 세무·회계전문가, 경영인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도의 관련 실·국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감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여 도의 감사부서장이 겸임하며,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취득, 건설, 개발, 분양, 임대 관리사업
2. 토지의 취득, 개발, 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3. 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4. 관광·리조트 등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5. 공유수면 매립사업
6.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7.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8.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9.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10. 체육시설 건립 및 공원개발사업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3. 그 밖에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② 공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업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자문을 얻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가 법 제71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2항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2. 그 밖에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비용
-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도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① 도지사는 공사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사채발행 등) ① 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하고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따라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업무상황의 공표) 사장은 당해 연도의 업무상황을 6월과 12월말 현재로 작성하여 익월 20일 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자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 부과 기준) ①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제1항 별표와 같다.

② 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늘릴 때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기타 제반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관련법령 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46조 (업무상황공표) ① 관리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9조 (설립) ②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53조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X금액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액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제58조 (임원의 임면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이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사채발행 및 차관) ① 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발행의 한도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⑥ 사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

제73조 (감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74조 (보고 및 검사등)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75조의2 (업무상황등 공표)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를 "사장"으로 본다.

제82조 (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없이 제74조(제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중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각각 부과·징수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⑨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3조 (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①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5호 (생략)

⑤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를 늘릴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